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상진

천 칠 : 문화홍보관 심계섭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750 호

1980. 2. 5

시 보

차 래

◎ 조 래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 1400 호 :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| 3 |
| 제 1401 호 : 서울특별시 한강 보전위원회조례 | 4 |
| 제 1402 호 :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| 4 |

◎ 고 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 38 호 :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 | 6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◎ 공 고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 35 호 : 환자계획법령공람공고 | 7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
| | | | | |
|-----|----|----|----|----|
| 법률기 | 정원 | 국면 | 국면 | 국면 |
| Chu | | | | 读 |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

조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 [圜]
1980년 2월 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400호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조(목적) 도시계획법 제 76조

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제 1항중 전단에 '도시계획법' 시행령 제 6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'를 삽입한다.

제 4조중 제 1항 및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

자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 2부 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 서 호선한다.

제 5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7조 제 1항중 '둔다'를 '둘수 있다'로 하고 제 2항중 '5인이내'를 '3인이상 5인이내'로 한다.

제 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'제 11조' 내지 '제 13조'를 '제 9조' 내지 '제 11조'로 한다.

제 8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서울특별시 직계에 의하여 위원회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되고 서기는 주관계장으로 한다.

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.

제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2조(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) 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도시계획시설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(4인 이내)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3조(수당등의 지급)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

7-4 제750호·시

보 1980. 2. 5.

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 (圜)

1980년 2월 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1 호

서울특별시한강보전위원회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한강의 오염방지와 정화 및 자연풍치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의 자문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한강보전위원회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1. 한강보전의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
2. 한강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한강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5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 ② 위원은 환경국장, 학계, 교육계, 언론계, 법조계, 문화예술계, 사회단체, 기타 유관기관과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제 4 조 (충용) 위원회의 회의소집, 의결방법,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규정을 충용한다.

제 5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 (圜)

1980년 2월 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2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별표제 1호 「시설분담금액표」 및 별표
제 2호 「가. 급수사용료 요율표」를
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제 2호 「나. 급수종별구분표」

1. 제 1종」의 26호중 업태란의 「염
색업」을 「염색업 및 섬유류 가공
제조업」으로 하고 적요란의 「염색
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」을 삭제한다.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80년

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진동) 이 조례 제 22조의 급수
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
하여 부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
적용한다.

다만,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
아니한다.

가. 1980년 3월징수분: 조정량의 5/6
종전요율, 조정량의 1/6 개정요율
나. 1980년 4월징수분: 조정량의 2/6
종전요율, 조정량의 4/6 개정요율

(별표제 1)

시 설 분 담 금 액 표

| 구 분 | 시 설 분 담 액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신 설 | 개 조 |
| 내경 13 % | 60,000 원 |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시설분 담금 차액을 징수한다. |
| " 20 " | 170,000 원 | |
| " 25 " | 280,000 원 | |
| " 40 " | 710,000 원 | |
| " 50 " | 1,000,000 원 | |
| " 75 " | 2,370,000 원 | |
| " 100 " | 4,320,000 원 | |
| " 150 " | 9,700,000 원 | |
| " 200 이상 | 17,250,000 원 | |

※ 내경구분은 양수기 구경을 기준한다.

7-6 제 750 호 시

보 1980. 2. 5.

(별표제 2)

가. 급수사용료·요율표

| 구분 업종 | 1 전 1개월기본요금 | | 초과사용료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기본수량(m^3) | 기본요금(원) | 사용구분(m^3) | 당단가(원) |
| 제 1 종 | 30 | 5,500 | 31-200 | 270 |
| | | | 201-300 | 370 |
| | | | 301 이상 | 450 |
| 제 2 종 | 20 | 1,400 | 21 이상 | 170 |
| 제 3 종 | 15 | 400 | 16-30 | 50 |
| | | | 31-50 | 110 |
| | | | 51 이상 | 170 |
| 제 4 종 | 500 | 175,000 | 501 " | 570 |
| 제 5 종 | 500 | 35,000 | 501 " | 90 |
| 제 6 종 | 사용수량 1 | 당 110 원 | | |
| 제 7 종 | 100 | 5,000 | 101 이상 | 50 |
| 제 8 종 | 사용수량 1 | 당 270 원 | | |

* 사설소화전 기본요금 월 1,000 원 (1년분을 1회에 징수할 수 있다)으로 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 종요율에 의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8 호

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

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
계획법제 13조규정과 건설부고시제
463호(79.12.10)의 권한위임에
따라 이들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
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503호(79.12.5)
에 의거 시설 결정된 마포구 관내
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을

1980. 2. 6.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지적승인내역

| 구분 | 시 설 명 | 위 치 | 면 적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신설 | 여객자동차정류장 | 마포구상수동 62 번지입대 | 1,910 m^2 | 정마운수 |
|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| | | | |

보 1980. 2. 5. 7-7

[공 고]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35 호

환경 계획 변경 공람 공고

1.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환경예정지에 대하여 환경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,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계획변경고지 등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에 공한다.

2. 환경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배치하고 보이고 있으며,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한다.

1980. 2. 7.

서울특별시장

- 환경 변경 대역 -

- 사업명: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
- 변경면적: 6,112.8평
- 변경위치: 동대문구장안동 206 의 21와 52필지
- 빌첨도서: 생략